

[서식 예]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등청구의 소

소 장

- 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- 피 고 1. △△토지수용위원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위원장 △ △
 - 2. △△시 △△구 법률상 대표자 △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〇〇. 〇. 〇.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처분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.
- 2. 피고 △△시 △△구는 원고에게 금 50,000,000원을 지급하라.
- 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기초사실



- 가. △△시장은 19○○. ○. ○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, 제91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인 '○○ ○○동 도로확장공사'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함으로써, 원고 소유 별지기재 토지(이하'이 사건 토지')가 위 도시계획사업지역에 편입되었다.
- 나. 피고 ○○구는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○○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, 동 위원회는 19○○. ○. 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 성북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되 그 손실보상금을 100,000,000원[총평수(10,000평)×평당단가(10,000원)], 수용시기를 19○○. ○. ○.로 정하여 토지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.
- 다. 이에 원고는 보상금을 증액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, 이에 피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는 19〇〇. 〇. 〇. 원고의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 결(이하'이 사건 재결')을 하였습니다.

2. 이 사건 재결의 위법성

- 가.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산정방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내용상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나.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가가 선정되어 있지 않고, 또한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에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의 표준지도 없습니다.
- 다. 그럼에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, 인접지역의 표준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소외 토지평 가사합동사무소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토지수용재결 및 이 사건 재결을 발하 였던 것입니다.
- 라.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는 표준지가가 선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,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목도 없으므로 결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의 일반조항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. 만약 이에 의한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최소한 금 150,000,000원[총평수(10,000평)×평 당단가(15,000원)]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.

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재결 중 보상금증액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, 피고 ○○시 ○○구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과 위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인 금 50,000,000원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 재결서정본송부

1. 갑 제1호증의 2 재결서

1. 갑 제2호증 이의신청서

1. 갑 제3호증 도면

1. 갑 제4호증 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사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○ ○시 ○ ○구 ○ ○동 ○ ○ 대 10,000평방미터. 끝.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